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선박국용	○	○				○			SA		
	2) 해안국용	○	○				○			SB		
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 MF전용수신기	○	○				○			MR		
	2) MF·HF전용수신기	○	○				○			HR		
	3) VHF전용수신기	○	○				○			VR		
다.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SN		
라.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MF·HF송수신장치	○	○				○			SH		
	2) VHF송수신장치	○	○				○			SV		
마.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1)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	○				○			SRRT		
	2)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	○				○			SRAIS		
바. 네비텍스수신기		○	○				○			NR		
사.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1)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			SD		
	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미 부착형	○	○				○			SE		
	3) 개인위치지시용 무선 표지설비	○	○				○			PLB		
아.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VA1		
자.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VA2		
차.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VA3		
카. 단축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		
타. 경보자동전화장치		○	○				○			T		
파.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	○				○			WA		
	2)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B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	○				○			WC		
하.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1) 국제 항해용	가) 표시면의 유효 직경 32cm이상	○	○				○			RAL	
		나) 표시면의 유효 직경 25cm이상 32cm미만	○	○				○			RAM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다) 표시면의 유효 직경 18cm이상 25cm미만	○	○				○			RAS	
	2) 국내 항해용		○	○				○			RC	
	3) 국내 소형선박용		○	○				○			RD	
거. 무선방위 측정기	1) 의무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	
		나) 중단 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	
	2) 임의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			DAA	
		나) 중단 파무선 방위 측정기	○	○				○			DB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	○				○			DCA	
너. 라디오부이의 기기					○			○			B	
더.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 자동식별장치		○	○				○			AIS1	
	2)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	○				○			AIS2	
	3)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	○				○			AIS3	
러.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1) 해안국용		○	○				○			DHF1	
	2) 선박국용		○	○				○			DHF2	
머. 자율해상 무선 기기	종별 A		○	○				○			AMRD1	
	종별 B		○	○				○			AMRD2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A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p>※ 비고</p> <p>1.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제조국 정부로부터 국제적 규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항공인증(TSO 등) 또는 전파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및 회로도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 규정은 별도 고시하기 전까지 적용한다.)</p>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	○		○		○			SRG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SRA	
나.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RLS	
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1	
라.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S	
마.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				○			P1	
	2) 라디오로봇 기기		○				○			P2	
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CA1	
사.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1	
	2) 해상용	○	○		○		○			CCCA2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 송·수신기기	○	○				○			CCCA	
아.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PMSE	
자.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2	
차.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3	
카.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IPN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IPN1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4) 기 타	○	○				○			IPN9	
타.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MOB	
파.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5855~5875MHz)	○	○				○			ITSRL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5895~5925MHz)	○	○				○			ITSRW	
하.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5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5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3) 기 타	○	○				○			FVG53	
저.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4.7 GHz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FVG6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62	
	3) 기 타	○	○				○			FVG63	
<p>※ 비 고</p> <p>○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p>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MCA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MCA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A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MCA4	
	5) 기타	○	○				○			MCA9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PCS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PCS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PCS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PCS4	
	5) 기타	○	○				○			PCS9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M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M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M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MT4	
	5) 기타	○	○				○			IMT9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LTE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LTE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TE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LTE4	
	5) 기타	○	○				○			LTE9	
마.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O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O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O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OT4	
	5) 기타	○	○				○			IOT9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1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12	
	3) 기 타	○	○				○			FVG13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2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22	
	3) 기 타	○	○				○			FVG23	
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ERT	
자.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A2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GMPCS	
카.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DATA	
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3	
	2) 해상용	○	○		○		○			CCCA4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			CCCA5	
파.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P	
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WIBRO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BS	
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GHz 주파수 대역	○	○				○			WLL1	
	2) 26GHz 주파수 대역	○	○				○			WLL2	
더.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3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32	
	3) 기 타	○	○				○			FVG33	
러. 5G 이동통신용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FVG4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FVG4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4.7 GHz 대역)	3)기 타	○	○				○			FVG43	

※ 비 고

o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	가) 5150~5350MHz, 5470~5850MHz 주파수 대역	○	○		○		○		LARN5	
		나) 5925~6425MHz 주파수 대역	○	○		○		○		LARN5A	
		다) 5925~6425MHz 주파수 대역	○	○		○		○		LARN5D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라) 5925~7125MHz 주파수 대역	○	○		○		○		LARN5B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마) 17700~17740MHz, 19260~19300MHz 주파수 대역	○	○				○		LARN5C	
	6) 중계용 무선기기	○	○				○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	○				○		RDR			
12) 지능형 교통 시스템용 무선기기	가) 5855~5875MHz의 무선기기	○	○				○		ITSOL		
	나) 5895~5925MHz의 무선기기	○	○				○		ITSOW		
13) 재난경보방송용 무선기기	○	○				○		CWB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MHz 주파수 대역	○	○		○		○		RFID1		
	2) 433MHz 주파수 대역	○	○					○	RFID2		
	3) 13.56MHz 주파수 대역	○	○					○	RFID3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MHz ~ 923.5MHz 주파수 대역	○	○					○	USN1		
	2) 940.1MHz ~ 946.3MHz 주파수 대역	○	○					○	USN2		
	3) 1.7GHz 주파수 대역	○	○					○	USN3		
	4) 940.1MHz ~ 944.3MHz 주파수 대역	○	○					○	USN4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5) 925MHz ~ 931MHz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					○		USN5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GHz 주파수 대역	○	○	○	○			○		DCP17
	2) 2.4GHz 주파수 대역	○	○	○	○			○		DCP24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MHz ~ 264MHz 주파수 대역	○	○					○		FACS2
	2) 22GHz ~ 23.6GHz 주파수 대역	○	○					○		FACS3
	3) 57GHz ~ 66GHz 주파수 대역	○	○					○		FACS1
	4) 122GHz ~ 123GHz 주파수 대역	○	○					○		FACS4
	5) 244GHz ~ 246GHz 주파수 대역	○	○					○		FACS5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					○		MICS4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1) 5.8GHz 주파수 대역	○	○					○		SRD5
	2) 10GHz 주파수 대역	○	○					○		SRD10
	3) 24GHz 주파수 대역	○	○					○		SRD24
	4) 70GHz 주파수 대역	○	○					○		SRD70
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	○					○		TVWS1
	2) 이동형 기기	○	○					○		TVWS2
파. 레벨측정 레이더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		TLPR
	2) 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더	○	○					○		LPR

※ 비 고

1.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3.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5. 라목 5)의 5925~6425MHz, 5925~7125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H	
나.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HF대 기기	○	○				○			HAM1	
	2) VHF/UHF대 기기 등	○	○				○			HAM2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시스템류	1) 교환시스템 (전화, 데이터, PBX, ATM, 키폰 등)	○		○				○		B11	
	2) 자동음성처리 및 전자사서함시스템	○		○				○		B41	
	3)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		○				○		B43	
	4)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		○					○	LOW2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B99	
나. 회선중단 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C11	
	2)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중단장치	○		○				○		C21	
	3) 원거리(WAN) 전송장치 (64kbps이하 · 2,048kbps · 44,736kbps 회선에 접속 되는 장치)	○		○				○		C31	
	4) PCM단국장치	○		○				○		C4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중단장치류(1,544kbps · 155,520kbps 인터페이스 등)	○		○				○		C99	
다. 단말기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A43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		A84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A44	
4) 전화기류 (전화기, 회의용 브릿지, 회선 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 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		○				○		A11	
5)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 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6)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 기기 (휴오트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				○		A17	
7)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A20	
8) 모뎀	○		○				○		A21	
9) 팩시밀리 모뎀	○		○				○		A23	
10)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		A24	
11)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A32	
12)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A33	
13)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A34	
14)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		A42	
15) 원격제어기기	○		○				○		A45	
16)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 기기	○		○				○		A51	
17) 회선장애 감시기기	○		○				○		A52	
18)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GDSL 모뎀 등)	○		○				○		A81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사업자망에 접속 하는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5Gbps/10Gbps 단말장치 등)	○		○				○		A82	
20) 광동축 혼합설비에 접속 되는 데이터 통신용 단말 장치(케이블모뎀 등)	○		○				○		A86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21) 공중전화기	○		○					○	A18	
22) ISDN 망중단기기(NTE)	○		○					○	A61	
2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A62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 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	A63	
25) 접속 커넥터			○					○	LOW11	
26)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IP카메라, 폐쇄회로TV, 네트워크 비디오녹화기 등)	○		○					○	A90	
27) 가입자보호기(전화용)			○					○	LOW20	
2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A99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		○				○		D11	
	2) 주파수변조기	○		○				○		D12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D88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		A85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				○		A83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증폭기	○		○				○		D21	
나. 레벨조정기	○		○				○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		D33	
라. 광 증폭기	○		○				○		D34	
마. 신호처리기	○		○				○		D32	
바. 분기기			○					○	LOW12	
사. 분배기			○					○	LOW13	
아. 동축케이블			○					○	LOW14	
자. 보호기			○					○	LOW15	
차. 가입자보호기(CATV)			○					○	LOW16	
카. 광분배기			○					○	LOW17	
타. 광케이블			○					○	LOW18	
파. 직렬단자			○					○	LOW19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		D99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산업·과학·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1)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11		
	2)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21		
	3)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31		
	4)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41		
	5) 삭제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	○						○	○		ISM51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	○						○	○		ISM52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 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 기기류	○							○	MOB11		
	2)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전장품)	○						○		MOB31		
	3) 전자식 운행기록계	○							○	LIM11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땀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1)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 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 청소기)	○						○		CLN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2.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적합등록 대상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스팀 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		IRN11		
	3)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						○		DSM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적합등록 대상	
	4)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전기그릴, 전기호브, 전기공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						○	○		MWO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제품에만 적용
	5)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		WSM11	세탁기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과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를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6)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전기 머리인두, 모발말개)	○							○		HDR11	
7) 전기보온기 및 전기 온장고, 전기주은기	○							○		WRM11	
8)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강동 따개, 전기칼, 커피 분쇄기, 빙삭기, 전기 고기갈개, 전기국수 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및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		KTC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9)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 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시스템쿠커, 달걀 조리기, 우유가열기, 찜병가열기, 요쿠르트 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전기액체 가열기기)	○					○		○		CUK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제품에만 적용
1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방석,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요 포함)	○					○		○		MAT11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 제품은 제외
11) 전기찜질기	○							○		STW11	
12) 발 보온기 및 전기 손난로	○							○		WRM21	
13)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 하는 것) 및 전기 순간온수기	○							○		POT11	
14) 전기냉장·냉동 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전기냉수기 포함)	○							○		COL11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15) 전자레인지 (300MHz ~ 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							○		RAM11	
16) 가정용 전동채분기	○							○		SEM11	
17) 전기충전기	○							○		CHG11	출력 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
18)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포함)	○						○		HRY11	
19)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 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전난방기)	○						○		STV11	
20) 전기맛사지기	○						○		MSG11	
21)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에 한함)	○						○		SCD11	
22)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포함) ※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PUM11	여 과 기 능 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 이외의 기기는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3) 전기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및 사우나용 전열기 포함)	○						○		SUN11	
24) 전기육조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육조기포발생기 포함)	○						○		BTH11	
25) 공기청정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AIR11	정 격 입 력 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
26) 자동판매기	○						○		MHN11	
27)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FAN11	정 격 입 력 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
28)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BTH21	
29) 가습기	○						○		MST11	
30)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						○		DIS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31) 전기용해기 (왁스용해기, 초코렛 용해기, 파라핀용해기)	○						○		MHN21	
	32) 이미용기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 모발가습기, 손톱 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 사우나기)	○						○		PET11	
	33)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						○		SKT11	
	3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CHR11	
	35) 전기온수매트 (전기보일러, 전기 온수침대 포함)	○						○		BOL11	
	36)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		BRH11	
	37) 해충퇴치기 및 전기포충기	○						○		VRM11	
	38) 전기집진기	○						○		DUS11	
	39) 착유기	○						○		MIL11	
	40)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수하물 보관기, 지폐 및 동전 교환기)	○						○		SEV11	
	41) 전기에어커튼	○						○		CTN11	
	42) 팬 코일 유닛(Fan coil unit)	○						○		FAN21	
	4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44)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물레이션게임 기구, 인형뽑기, 닥트판 농구게임기 및 기타 게임기기)	○						○		GAM11	
	45) 전동형 롤스크린	○						○		CTN21	
	46)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		VRM21	
	47) 보플제거기	○						○		CLE11	
	48) 산소이온발생기	○						○		COW11	
	49) 전기정수기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전기이온수기 포함)										
50)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포함)	○							○		
51)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드릴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톱,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잔디깎기, 전기못총, 트리밍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ETL11	정격 입력이 1.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52)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MOV11	
53) 전기가열기기 (납땀인두, 납땀제거인두, 권총형납땀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 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								○	WDM11
54)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								○	AQU11
55) 기포발생기기	○								○	BBL11
56)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BLD11
57) 전기분무기	○								○	MST12
58) 전기소독기	○								○	MST13
59)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ROL11
60) 과일껍질깎기	○								○	KCN11
61) 감자탈피기	○								○	
62) 전기정미기	○								○	
63) 전기빵자르개	○								○	
64) 애완동물 목욕기	○								○	POL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65) 전기주류속성기	○						○	ELD11		
	66) 전기시계	○						○	WAT21		
	67) 컴프레서	○						○	COM11		
	68) 전기분수기	○						○	WTP11		
	69)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PJT11		
	70) 수도동결방지	○						○	WTR11		
	71)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BIN11		
	72) 전기작동 도어록	○						○	DOR11		
	73) 삭제										
	74) 삭제										
	75) 전기장난감	○						○	TOY11		
	76) 전기헬스기구	○						○	HEA11		
라.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 까지 주파수대 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 기기, 백열등기구, 전기 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 방전등기구, 투광조명 기구)	○						○	LIT11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 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 등록 대상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 장치[자기식안정기, 전 자식안정기, 네온변 압기, 네온변압기조 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	IVT11	램프용 자기 식·전자식 안 정기의 정격입력 이 1kW를 초과 하는 것은 자 기시험 적합 등 록 대상	
	3)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	LIG11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 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 전등, 조광기) ※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	○							○	LIT21	
마.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 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 전원시설)	○							○	TRA11		
바. 전력선통신기기류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							○	LIN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 응용설비는 대상에서 제외										
사. 무정전 전원장치	○						○		IMO11	정격용량이 10kVA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 시험 적합 등록 대상
아.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1)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타이머·타이머스위치 포함)	○						○	SWT11	
	2) 전자개폐기									
	3) 전자식 온도조절기									
	4)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 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1) 텔레비전수상기	○					○	VDO11		
	2) 영상모니터	○					○			
	3)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			
	4) 비디오카메라	○					○			
	5) 튜너	○					○			
	6) 편집기	○					○			
	7) 디스크플레이어	○					○			
	8) 라디오수신기	○					○	RAD11		
	9) 앰프 (앰프내장형 스피커 포함)	○					○	AMP11		
	10) 리시버	○					○	AUD11		
	11) 음성기록계	○					○			
	12) 음성플레이어	○					○			
	13) 오디오시스템	○					○	AUD11		
	14) 전자악기	○					○			
	15) 위성방송수신기	○					○	STB11		
	16) 비디오게임기구	○					○			
	17) 비디오폰	○					○	VDO21		
	18) TV영상프로젝터	○					○			
	19) 음질조절기	○					○	AUD2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이퀄라이저 포함)										
20) 오디오프로세서	○						○			
21) 신호변환장치(AD/DA)	○						○			
22) 음성 및 영상분배기	○						○			
23) 컴프레서 게이트	○						○			
24) 전자시계	○						○		WAT11	
25) CCTV 카메라	○						○			
26) 영상전송기	○						○			
27)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			
28) 영상기록계	○						○		VDO31	
29) A/V 신호수신기	○						○			
30) 영상프로세서	○						○			
3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			
32) 턴테이블	○						○			
33) 컴퓨터류	○						○		IMC11	
34) 컴퓨터 주변기기류 [입력장치(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콘트롤러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						○		IMA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		IMI	
36) 기타 정보기기류	○						○		IMI61	
37) 사무기기류 (코팅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금전등록기, 어학학습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재단기, 제본기, 전자칠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충전기, 번호표발행기 및 기타 사무기기류)	○						○		IMO	
38)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MEA22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39)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 설비 등의 기자재류 (제2조제1항 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	MEA11		
	40)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						○	IMDD		
	41) 삭제										
차. 승강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11		
	2)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21		
	3) 에스컬레이터·무빙 워크 및 구성품류	○						○	ELV31		
	4)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						○	ELV41		
카. 소방용품 기기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기기에 한함)	1) 누전경보기(수신부)	○						○	FIR1		
	2) 가스누설경보기	○						○	FIR2		
	3) 수신기	○						○	FIR3		
	4) 중계기	○						○	FIR4		
	5) 감지기	○						○	FIR5		
	6)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	FIR6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FIR7		
	8) 가스·분말식 자동 소화장치	○						○	FIR8		
	9) 교체에어로졸식자동 소화장치	○						○	FIR9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FIR10		
	11) 상업용주방자동 소화장치	○						○	FIR11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						○	FIR12		
	13) 자동폐쇄장치	○						○	FIR13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 쿨러설비	○						○	FIR14		
	15) 플랩댐퍼	○						○	FIR15		
	16) 유도등	○						○	FIR16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17) 비상조명등	○						○		FIR17		
	18) 기타 소방기기류	○						○		FIR18		
타.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다목 52)로 분류)		○						○		BIC		
파.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		○						○		PWR11		
하. 기타 기기류	1) 가목, 다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파목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및 빌딩제어)으로 사용되는 기기류	○							○	IND		
	2)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주차차단장치)	○							○	LIM21		
	3) 절연변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 변압기, 교류어댑터)	○							○	AVR11		
	4) 고전압 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	HVT11		
	5) 전기용품 보호용 부속기기(케이블릴, 누전차단기)	○							○	CBL11		
	6)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	○							○	SEC11		
	7) 전기용접기류 (아크용접기, 총형아크 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							○	IMV11		
거. 삭제												
너. 그 밖에 특수조건 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1) 다목, 라목 1)에서 3), 자목 1)에서 32) 및 37)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	○							○	REC		
	2) 가목, 다목, 사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4m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대형기자재	○							○	○	REC1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을 적용
	3) 가목, 다목, 사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							○	○	REC2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을 적용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단면 최대 길이가 2m를 초과하며 무게가 250kg을 초과하는 융복합 멀티미디어 기기류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							○	REC3	
더.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UBD	

※ 비 고

-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목 40)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 다. 카메라 렌즈
 -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 더목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 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 더목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또는 ‘조명기기류’를 적용한다.
-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자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승압케이블,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하목 7)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에서 제외한다.
- 너목 2) 또는 3)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식별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